우리나라의 천연기념물의 식물분류학적 고찰

김 태 욱

〈서울대학교 농대〉

—목 차—

1. 천연기념물 보존사업의 연혁
2. 시도별 천연기념물 분포상황
3.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종류〔식물〕
4. 시도별 천연기념물의 과분류
5. 지정사유로 본 천연기념물
6. 토지소유별 천연기념물 상황
7. 수목측정법
8. 해제된 천연기념물의 종류
9. 북한지역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
10. 후보목없이 해제된 천연기념물
11. 천연기념물의 훼손
12. 천연기념물의 보존책

1. 천연기념물보존사업의 연혁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보존사업은 1933년 8월 9일(일정시)에 제령 제6호로 조선보물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 전문 24조를 공포하므로써 시작된 것이다. 동년 12월 5일 보존령 실시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제136호로 보존령 시행규칙 전문 40조를 공포하고 같은 날자로 조선총독부 훈령 제42호 보존령 시행수속을 공포실시하게 되었다. 보존회의 관제를 1933년 8월 18일에 칙령 제224호로 공포하였고 같은해 12월 5일에는 보존회 의사방법을 규정하는 보존회 의사규칙을 조선총독부 훈령 제43호로 공포하였다. 이 모든 규정은 1933년 12월 11일부터 조선총독부 훈령 제137호로서 실시하게 되었다. 그 다음날인 12일에는 보존위원 전원이 임명되었다.

1934년 2월부터 국내 보물 고적 명승천연기념물등의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하여 같은해 5월 1일에 역사적인 제1차 보존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보존요목을 제정하였는데 식물 19개항목 등을 9개항목 지질광물이 13개항목 천연보호구역이 1개항목으로된 보존요목을 제정하였다. 제1회 보존회에서 의결한 천연기념물은 식물 11건 동물 5건이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미군정이 시작된 이후에도 일정시대에 제정한 보존법에 의거 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미군정 시대를 거쳐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일정시대에 제정한 보존법을 사용하였다. 보존사업을 위한 기구로서는 문교부 문화국 문화보존과의 주관 사무로 되었었다.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보존위원회를 설치 하였었다. 그동안 보존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법률 제정과 아울러 보존 기구의 확충이 절실히 요망 되었으나 아무런 성과를 보지 못하던중 1962년 1월 10일자로 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고 법률 제961호로

서 공포하게 되었다.

1962년 6월 26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각령 제843호로서 제정공포 되었다. 이 법에 따라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문화재 지정기준까지 만들고 현재는 이 법에 의해 보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64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35호로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문화재보호법이 공포된 뒤 제3분과 위원회에서는 제1차 사업으로 이미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을 재지정하였다.

첫째, 종전 문헌과 참고 자료와의 대조참조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지정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답습한다.

둘째, 현실태가 확실한 것 만을 우선적으로 재지정하고 불확실한 것은 실태를 조사한 뒤에 재지정키로 한다.

셋째, 북한 지역에 있는 천연기념물은 남북통일시까지 재지정을 보류키로 하였다. 1968년 7월 24일 정부기구 개편에 따라 문화재 관리국은 현재 문화공보부에 속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문화재위원회도 문화공보부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북한에 것은 제외)에 현존하는 천연기념물수는 식물 103점 동물 32점 광물 8점 천연보호구역 3점으로 모두 146점이다.

1933년이후 지정되었던 것이 해제된 것은 식물20점 동물 4점이다.

일정시 북한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은 식물 17점 동물 14점 광물 5점 이었다.

2. 시도별 천연기념물 분포상황

다음 표와 같다.

시도별 천연기념물 분포상황

(괄호내는 해제된 천연기념물)

시도별	식물	동 물	광 물	시도별	식 물	동 물	광 물
서 울	7(3)			전 남	21(5)	4(1)	
경 기	5(2)	3		경 북	20(2)	3	3
강 원	8(1)	3	1	경 남	14(1)	6	1
충 남	7(1)	1(3)		제 주	11(1)	1	2
충 북	6(2)	4		부 산	2		
전 북	8(2)		1				

3.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종류(식물)

우리나라 현존 천연기념물(식물)은 총 54종중 목본 50종 초본 4종을 대부분이 목본을 되어있다. (1969 3월 현재)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종류

과 별	점 수	수 종
고사리과	1	파초일엽 1
은행나무과	11	은행나무 11
주목과	4	비자나무 4

과 별	점 수	수 종
소나무과	15	백송 8 솔송나무 1 섬잣나무 1 소나무 1
		곰솔 1 젓나무 1 반송 1
측백나무과	8	측백 3 향나무 4 곱향나무 1
버드나무과	3	왕버들 3
자작나무과	2	개서나무 2
참나무과	5	너도밤나무 1 굴참나무 1 밤나무 1
		북가시나무 1 줄참나무 1
느릅나무과	9	팽나무 3 느티나무 4 푸조나무 1 긴잎느티나무 1
녹나무과	4	녹나무 2 참식나무 1 후박나무 1
콩 과	3	등나무 2 조각자나무 1
장미과	5	왕벚나무 3 을벚나무 1 섬개야광나무 1
운향과	2	탱자나무 2
대극과	1	굴거리나무 1
감탕나무과	2	호랑가시나무 1 꽝꽝나무 1
무환자나무과	1	모감주나무 1
갈매나무과	2	망개나무 1
담팔수과	1	담팔수 1
차나무과	5	동백나무 5
부처꽃과	1	배롱나무 1
소태나무과	1	소태나무 1
팥꽃나무과	1	산닥나무 1
두릅나무과	3	팔손이나무 1 송악 1 음나무 1
물푸레나무과	8	미선나무 2 이팝나무 6
꿀풀과	1	섬백리향 1
현삼과	1	오동나무 1
인동과	1	섬댕강나무 1
국화과	1	울능국화 1
수선화과	1	문주란 1
난초과	1	한란 1

4. 시도별 천연기념물의 과분류

서울;

소나무과(4) 백송4 은행나무과(2) 은행나무2 측백나무과(1) 향나무1

경기;

운향과(2) 탱자나무2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과1 소나무과(1) 백송1 차나무과(1) 동백나무1

강원;

은행나무과(3) 은행나무3 참나무과(2) 굴참나무1 밤나무1 느릅나무과(1) 긴잎느티나무1

충북;

물푸레 나무과(2) 미선나무 소나무과(2) 소나무1 백송1 측백나무과(1) 측백1 갈매나무과(2) 망개나무2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1
충남;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1 소나무과(1) 백송1 무환자나무과(1) 모감주나무1 차나무과(1) 동백나무1
전북;
감탕나무과(2) 호랑가시나무1 꽝꽝나무1 소나무과(1) 곰솔1 드릅나무과(1) 송악1 대극과(1) 굴거리나무1 녹나무과(1) 후박나무1 물푸레나무과(1) 이팝나무1 차나무과(1) 동백나무1
전남;
느릅나무과(4) 팽나무2 느티나무1 푸조나무1 주목과(3) 비자나무3 물푸레나무과(2) 이팝나무2 자작나무과(2) 개서나무2 차나무과(1) 동백나무1 장미과(2) 올벚나무1 왕벚나무1 버드나무과왕버들1 측백나무과(1) 곱향나무1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1 참나무과(1) 북가시나무1 녹나무과(1) 참식나무1
경북;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1 측백나무과(5) 향나무3 측백2 소나무과(3) 솔송나무1 섬잣나무1반송1 참나무과(2) 너도밤나무1 졸참나무1 콩과(2) 등1 조각자나무1 현삼과(1) 오동나무1 장미과(1) 섬개 야광나무1 인동과(1) 섬댕강나무1 국화과(1) 울능국화1 꿀풀과(1) 섬백리향1 버드나무과(2) 왕버들2 소태나무과(1) 소태나무 느릅나무과(1) 느티나무1
경남;
두릅나무과(2) 팔손이나무1 음나무1 소나무과(1) 백송1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1 주목과(1) 비자나무1 팔꽃나무과(1) 산닥나무1 부처꽃과(1) 배롱나무1 느릅나무과(1) 느티나무1 물푸레나무과(2) 이팝나무2
제주;
녹나무과(2) 녹나무2 장미과(2) 왕벚나무2 느릅나무과(2) 느티나무1 팽나무1 고사리과(1) 파초일엽1 수선화과(1) 문주란1 천초과(1) 한란1 소나무과(1) 곰솔1 담팔수과(1) 담팔수1
부산;
콩과(1) 등나무1 물푸레나무과(1) 이팝나무1

6. 지정사유로본 천연기념물

용문사의 은행나무(SCAN)

(1) 거수와노수(40)

은행나무과(11);

30호 용문산의 은행나무58호 어의궁의 은행나무 64호 두서면의 은행나무 76호 영월의 은행나무84호 금산향정의 은행나무 90호 벌교의 은행나무 165호 주문지 창덕리 은행나무 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175호 용계의 은행나무

느릅나무과(6);

35호 대구면의 푸조나무 95호 삼척소달면의 긴잎느티나무 161호 성읍리느티나무 및 팽나무 181호 하청의 느티나무 192호 청송신기등의 느티나무

참나무과(3);

96호 울진의 굴참나무 97호 주문진교향리의 밤나무 157호 울진불영사줄참나무

버드나무과(3);

80호 장성읍의 왕버들 116호 월성외동면의 왕버들 193호 청송덕의 왕버들

물푸레나무과(6);

36호 쌍암면의 이팝나무 44호 송광사의 이팝나무 183호 고창중산리의 이팝나무 185호 김해신천리의 이팝나무 186호 양산석계리의 이팝나무 187호 부산양정동의 이팝나무

주목과(2);

39호 병영면의 비자나무 111호 진도임회면의 비자나무
측백나무과(3);
88호 송광사의 곱향나무 158호 울진죽변리의 향나무 194호 창덕궁의 향나무
녹나무과(1);
41호 중문면의 녹나무
장미과(1);
38호 화엄사의 녹나무
차나무과(1);
83호 무안사마리의 동백나무
콩과(1);
89호 오류리의 등
소나무과(2);
160호 제주시곰솔 188호 익산신석리의 곰솔
두릅나무과(1);
164호 신방리음나무
부처꽃과(1);
168호 배롱나무
소태나무과(1);
174호 송사동의 소태나무

강화 탱자나무

(2) 분포한계에 따라 지정된것(15)
녹나무과(2);
112호 영광불갑면의 참식나무 자생북한지대
123호 부안격포리의 후박나무군락
감탕나무과(2);
122호 부안 도청리의 호랑가시나무군락
124호 부안 중계리의 꽝꽝나무군락

차나무과(2);
66호 대청도동백나무 자생북한지 169호 마량리동백나무숲
운향과(2);
78호 강화갑곶리의탱자나무 79호 강화사기리의 탕자나무
대극과(1);
91호 내장산의 굴거리나무군락
참나무과(1);
110호 함평의북가시나무자생북한지대
두릅나무과(1);
87호 금구의 송악자생북한지대
주목과(1);
153호 백양사 비자나무분포북한지대
수선화과(1);
19호 제주도 구좌면 문주란자생지
고사리과(1);
19호 제주도 신도 파초일엽자생지
난초과91);
191호 제주도의한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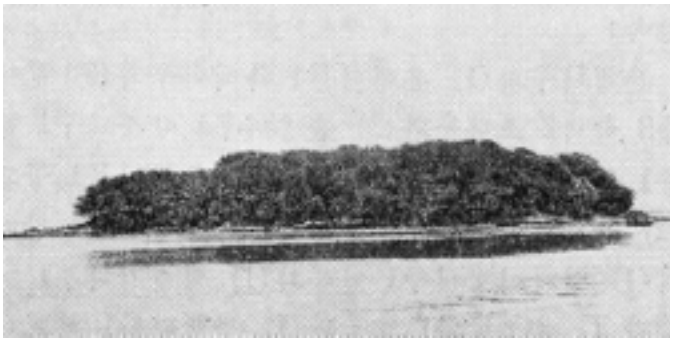

목도의 상록수림

(3) 학술상 진귀한 식물(10)
소나무과(9);
4호 서울통의동의백송 6호 서울원효로의 백송 8호 서울재동의백송 9호 서울수송동의백송 16호 밀양의백송 60호 송포의백송 104호 보은의백송 106호 예산의백송 180호 운문사의반송
콩과(1);
115호 옥산서원의조각자나무

(4) 숲(16)
28호 주도의 상록수림 29호 미조리의 상록수림 40호 예송리의 상록수림 65호 목도의 상록수림 92호 원성성남리의 수림지 93호 원성성남리의 성황림 107호 진도 의신면의 상록수림 136호 의연도의 상록수림 149호 난음비자림 150호 물건방조어부림 151호 백

련사동백림 154호 함양상림 172호 까막섬의 상록수림 176호 범어사 등나무순생지 184호 고창삼인리의 동백나무숲 189호 성인봉의 원시림

(5) 자생지로 지정된것(19)

측백나무과(6);

1호 달성의측백수림 42호 통구미의 향나무자생지 62호 영천리의 측백수림 173호 대둔산 왕벚나무 자생지 114호 영양의 측백수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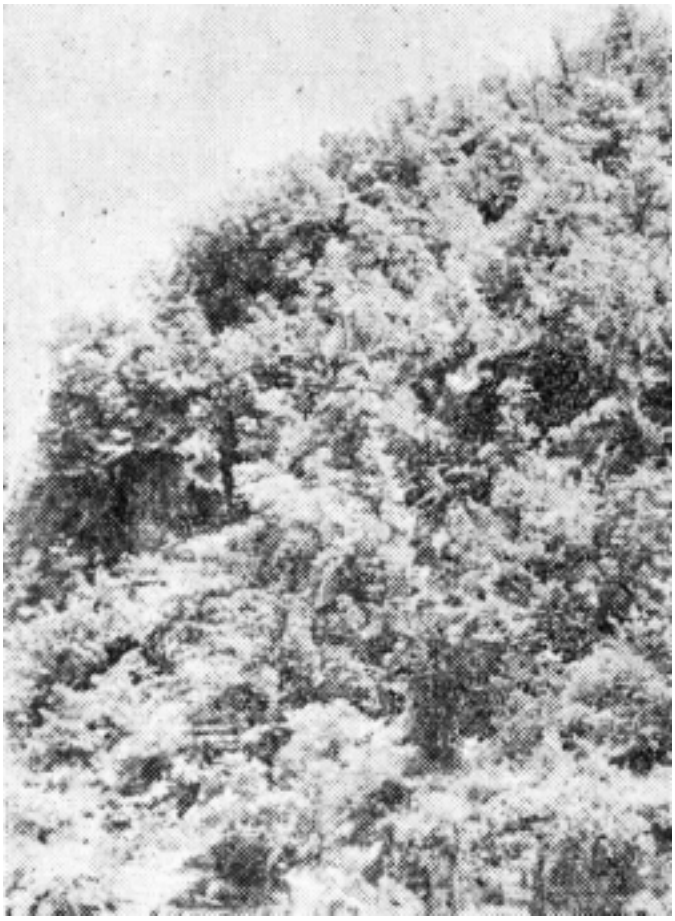

달성의 측백수림

장미과(3);

51호 도동의 섬개야광나무 156호 신예리의 왕벚나무자생지 159호 봉계동의 왕벚나무자생지

물푸레나무과(2);

14호 진천의 미선나무자생지

소나무과(2);

50호 대하동의 솔송나무 섬잣나무

두릅나무과(1);

63호 거제도의 팔소이나무자생지

현삼과(1);

47호 석문동의 오동나무
갈매나무과(2);
148호 속리의 망개나무 207호 보은 속리산의 망개나무
참나무과(1);
50호 대하동의 너도밤나무군락
녹나무과(1);
162호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인동과(1);
51호 도동의 섬댕강나무군락
무환자나무과(1);
138호 안면도의 모감주나무군락
팔꽃나무과(1);
152호 남해산닥나무 자생지
국화과(1);
52호 나리동의 울능국화
꿀풀과(1);
52호 나리동의 섬백향군락
담팔수과(1);
163호 서귀포담팔수자생지

함평대동면의 개선나무의 줄나무

(6) 줄나무(가로수)(4)
느티나무과(3);
82호 무안청천리의 팽나무의 줄나무 108호 함평대동면의 팽나무 느티나무의 줄나무
자작나무과(2);
82호 무안청천리의 개서나무의 줄나무 108호 함평대동며의 개서나무의 줄나무

(7) 명목(1)
소나무과(1);

103호 속리의 정이품송

(8) 천연보호구역(3)
170호 홍도의 천연보호구역 171호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182호 한라산천연보호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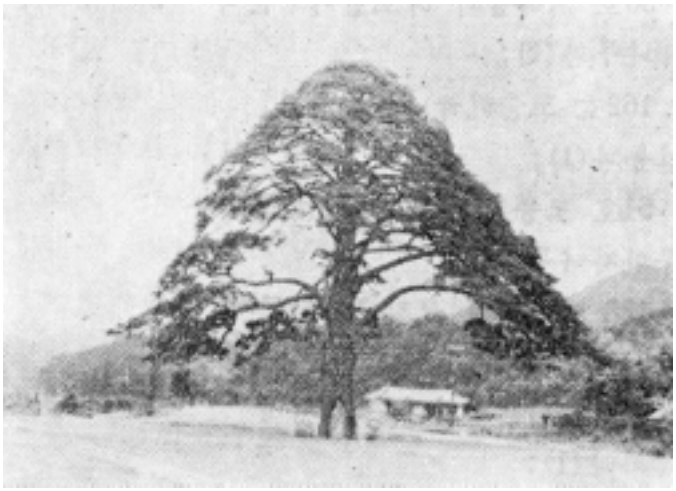

속리의 정이품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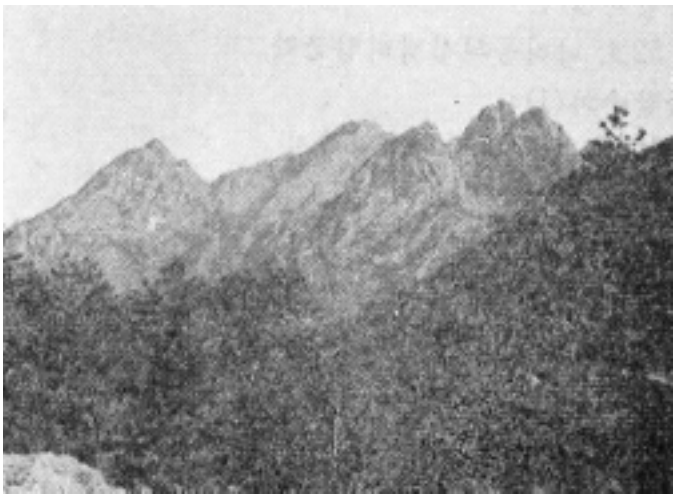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6. 토지소유별 천연기념물상황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식물분만)이 위치한 토지소유별 순위는 사유 62.5% 국유 23.9% 공유 9.1% 국유 및 사유 4.5%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의 분포상황은 중남부(中南部)지방(등온선과 일치한 도서지대와 해안선을 따른 해안지대)에 대부분 분포되고 있으며 난대성 식물의 분포한계가 되는 것과 자생지로 지정된 것이 많다. 내륙과 북부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천연기념물의 수가 점차 적어짐을 볼 수 있으며 대부분 거수와 노수 명목 등이다. 거수와 노수 명목 및 숲들을 보호하게 된 공통적인 사유를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신목(神木):
일명(一名) 부군목(府君木) 또는 장군목(將軍木)이라 칭하며 이 나무에 신령이 깃들었다고 하여 이 나무를 신격화시켜 한집 또는 그 마을 전체에 행복이 오기를 기원하는 것으로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대개 부락 근처에 있다. 이러한 신목은 대개 다음과 같은 전설을 가지고 있다.
(가) 발아가 잘되고 안되고 하는데 따라 풍흉(豊凶) 및 홍수와 한발등을 예측할 수 있다.
(나) 벌채하면 재해를 받고 그 마을의 병사자와 화재가 발생한다.
(다) 병자가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아들을 낳고자 기도를 하면 아들을 갖게 된다.
(라) 마을에 평안을 위해 제사를 지내는 관례가 있다.
(마) 봄에 발아가 일즉되면 가을의 추수가 빠르다.
(바) 나무 속에 귀신이나 큰 뱀이 있어 나무에 있어 나무에 손을 대면 재해를 입는다.
당산목(堂山木):
일명 성황목(城隍木) 또는 당사목(堂社木)이 라고 하여 산신당(山神堂) 산왕당(山王堂) 성황당등의 집뒤에 있는 나무들이다. 이러한 당(堂)은 산기슭 산꼭대기 재몰랑 마을의 입구등에 많다.
정자목(亭子木):
향교(鄕校) 사정(射亭) 별장(別莊) 정자에 풍치목(風致木) 피서목(避暑木)으로 심은 것이며 향교나 서당(書堂) 서원(書院)에는 공자(孔子)의 행단(杏亶)에 본을 따서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음을 볼 수 있다.
명목(名木):
성현(聖賢) 위인(偉人) 또는 왕족이 손수 심은 것이 많고 더욱 왕실(王室)에서 그 나무에 대하여 위계(位階)를 하사(下賜) 한 것이 있으며 역사적인 전설(傳說) 고사(古事) 신비적(神秘的)인 전설(傳說)을 간직한 것들이 많다.
숲:
방수(防水) 방풍(防風) 풍치(風致) 피서(避暑) 부락의 엄폐(掩蔽)등을 목적을 심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나눈다.
피서림(避暑林):
일명 영자목(影子木)이라 칭하며 도로변 부락 근처에 피서의 목적으로 심은 것이다.
호안림(護岸林):
일명 방축목(防築木)이라 칭하며 해안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것이다.
풍치림(風致林):
마을의 풍치 방풍 방조(防潮)와 부락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심은 것이다.

7. 수목측정법(樹木測定法)
필자가 1964년부터 서울대학교농과 대학교수이며 현재 문화재위원회 위원이신 이창복(李昌福)박사의 지도아래 1965년 걸쳐 만 2년간을 전국을 답사하며 천연기념물(주로 식물)을 조사하였던바 수목측정볍과 수령(樹令)조사법 등이 통일되고 있지 않아 많은 혼란을 주고 있어 현재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제수목 측정법을 소개한다.
수고(樹高): (축고개)

지상(地上)에서 나무의 맨 윗가지 끝 임단(林端)을 측정한다.
흉고직경(胸高直經): (윤척)
지상에서 1.2m의 둘레를 잰다. 만일 나무줄기가 울퉁불퉁하면 좌우 두 번 재서 평균치를 사용한다.
흉고둘레(胸高周圍): (권척)
지상 1.2m의 둘레를 잰다.
근원직경(根元直徑): (윤척)
지상20cm 되는곳을 측정한다.
근원경둘레(根元徑周園): (권척)
지상 20cm되는곳의 둘레를 잰다.
수령측정법(樹令測定法): (생장추)
생장추를 사용하여 조사한다.
수관측정법(樹冠測定法): (권척, 나침반)
나무 줄기르 중심으로 나침반을 놓고 동서남북 4방위의 맨끝까지를 아래로 수직시켜 수평하게 놓고 잰다.
이상 측정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시 열거하면 축고기 윤척 권척 나침반 생강추 등이다.

8. 해제된 천연기념물의 종류
소나무(6):
소나무3 백송2 곰솔1
참나무과(3);
갈졸참나무1 상수리나무1 졸참나무1
느릅나무과 (3);
팽나무2 느티나무1
측백나무(2): 측백1 향나무1
물푸레나무과(1): 이팝나무1
뽕나무과(1): 뽕나무1
노박덩굴과(1): 줄사철나무1
콩과(1): 회화나무1
층층나무과(1): 산수유나무1
대극과(1): 굴거리나무1
차나무과(1): 동백나무1
장미과(1): 매실나무1

9. 북한지역에 지정되었던 천연기념물(남북통일시까지 재지정이 보류된 것)
소나무과(3): 곰솔1 백송1 젓나무1
장미과(3): 산벚나무2 가침박달1
참나무과(3): 중국밤나무2 떡갈나무1
벼과(2): 고려조릿대1 조릿대1
은행나무과(1): 은행나무1
드릅나무과(1): 웅나무1

측백나무과(1): 해변노간주1
자작나무과(1): 소사나무1
물푸레나무과(1): 들매나무1
단풍나무과(1): 나도박달1
붓꽃과(1): 부채붓꽃1

10. 후보목이 없이 해제된 천연기념물 분포한계에따라 지정된 것
줄사철 나무 거수와 노수 : 소나무 갈졸참나무 뽕나무 상수리나무 회화나무 식물에 나타나는 기형 : 소나무 곰솔

11. 천연기념물의 훼손
천연기념물이 훼손되는 중요 원인은 자연적원인과 인위적원인으로 대별된다. 자연적원인은 자연사 풍해 병충해 수해 낙뢰 자연화등으로 대개 거수와 노수가 대부분이다.
인위적 원인은 인간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것인데
(가) 천연기념물에 대한 가치와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천연기념물에 대한 무지로 무의식중에 천연물에 손을 대어 파손을 입히는 일이다.
(나) 천연물의 이용에서 오는 것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훼손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천연기념물임을 지각하면서도 오직 눈앞의 사리 사욕만을 위한 행위로서 예를 들면 식물중 수목들을 신탄재 제지용 가구재 건축재 토목용재와 관상용으로 마구 벌채 및 채취했으며 또한 초본류는 약용과 관상용으로 모조리 채취했다.
그 실례로는 제주도에 있는 파초일엽 문주란등은 열대성 식물로서 식물분포상 북한(北限) 한계가 되는 학술상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도 관상용으로 모두 도채(盜採)되고 이 도채물이 버젓한 상품으로서 시판(市販) 되었던 까닭에 거의 절멸에 이르렀었다. 이밖에도 사냥꾼들이 동물 중 매우 희귀한 새까지 무분별 포획(捕獲) 했으며 물고기들을 독약 및 폭약을 써서 잡고 있어 어족을 전멸케하는 사례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듣고 보아왔다. 또한 광물은 공업원료로 암석은 석재로 마구 채굴 되었었다.
우리들의 살아있는 문화재가 이처럼 소수인의 몰지각으로 인해 절멸되고 있는 것은 뜻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한층 더 애석케 하고 있다.
(다) 토지의 이용과 발전에서 온 것으로는 울창하였던 자연계의 숲과 들판이 인류의 문화발전으로 그들의 영역이 갑자기 침해되어 입는 피해로서 가령 토지의 개간(開墾) 주택지의 조성 도로와 철도의 개설이 광업지구의 조성 군사시설의 설치 관광지의 개설이 각고장마다 생기므로 인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드디어는 고유한 동식물들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된 곳이 많아지고 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열목어(熱目魚)는 세계의 열목 분포의 남한(南限)으로서 학술상 매우 귀중한 자료임에도 그 부근의 광산에서 나오는 유독성 물질이 시냇물로 흘러 들어가므로 열목어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절멸상태에 있다.
이러한 실례는 허다한데 충북 속리산 법주사의 망개나무는 무지한 관광객들이 껍질을 벗기고 지팡이 감으로 마구 잘라 내어 드디어 고사(枯死)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인류문화 발전상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으나 애호를 위해 시급한 토지이용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천연물의 훼손들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이 위치한 토지가 대부분 사유지임으로 일반인들의 천연기념물에 대한

인식이 절실하며 철저한 보호 관리를 위해 점차 국가에서 매상하여 국유화 시킴은 물론 관리 위탁을 해야 하겠다.
(라) 공업의 발달에서 오는 것을 보면 날로 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많은 공장이 세워져 이 공장에서 내뿜는 유독성 물질과 연기와 가스는 수목을 말라 죽게하고 물고기들을 절종(絶種)케 하고 있다.
(마) 산화 및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순식간에 많은 면적의 손실을 주고 있다.
즉 산화는 낙뢰에 의한 자연도 있겠으나 보통은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 삼림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마다 우리는 듣고 보아왔다.
더욱이 6. 25사변이 준 피해는 부지기수에 달하고 있다.

12. 천연기념물의 보존책(保存策)
이상의 피해요인을 예방하자면
(가) 전국민에게 천연기념물 보존의 필요성을 신문 잡지 방송 영화 서적 벽보 엽서 및 우표 등을 통해 천연물 보존의 애호사상을 보급 계몽시킴과 동시에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길러주어 나아가서는 애국심을 고취(鼓吹) 시키는 계기를 만들게 되어 온 국민의 협조를 받도록 해야 하겠다.
(나) 어린시절부터 천연기념물의 보존사상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우도록 교과서에 보다 많은 천연기념물을 소개토록 한다.
(다) 이제까지 행정당국의 소극적 행정을 지양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있는 과감한 정책과 예산을 책정 우선 순위별로 중점적인 보존시설의 완비와 매년 관리 위탁인에게 최소한의 괸리 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라) 매년 전문가를 위촉하여 천연기념물에 대한 실태 조사보고서를 작성케하고 이에 준한 항구적인 보존책을 수립해야만 하겠다.